

2014학년도 제2차 〈제312차 이사회 회의록〉

2014. 05. 20.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4학년도 제2차

<제312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0 인	2 인

1. 일 시 : 2014.5.20(화) 17:00 ~ 18:40 (회의소집 통보일 : 2014년 5월 12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안재환,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흥
(10인)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 결석임원

- 이사 : 김선용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유희석, 총무처장 이주희, 연구처장 김재호,
행정부원장 박재호, 경리팀장 안영찬(본교) · 이재권(의료원) (6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이종화, 행정처장 이상권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중 열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희택
-1-

이사 이영현

6. 보고사항

이사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의료원,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주희 총무처장·김재호 연구처장이 아주대학교 주요업무 및 산학협력단 결산개요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어서 박재호 행정부원장·이종화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각 기관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사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12차 이사회 심의 안건은 학법대우 제14-92호(2014.05.12)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2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3호 아주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의안 제5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 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6호 2014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5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안), 의안 제7호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의안 제8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9호 아주대학교-광교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승인(안), 의안 제10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 제11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선임(안), 의안 제12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등 12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사장 :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계산서를 보시면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0,5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수입이 5,694백만원으로 총수입금의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 및 기부금수입이 1,347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현

이사 이영현

732백만원, 교육외수입이 253백만원으로 운영수입 합계는 8,026백만원이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2,5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보수 3,135백만원, 관리운영비 1,935백만원, 연구학생경비 2,151백만원, 교육외비용이 70백만원으로 운영지출 합계는 7,291백만원이며, 투자와기타자산지출 600백만원, 고정자산매입지출 186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2,4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2.28 현재 아주자동차대학의 자산규모는 33,341백만원이며, 부채는 4,154백만원, 기본금은 29,1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금 6,060백만원, 기타유동자산 541백만원, 기타자산 5백만원, 임의기금 3,200백만원, 유형고정자산 23,508백만원, 무형고정자산이 27백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4,121백만원, 고정부채가 33백만원이며,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22,259백만원, 임의적립금 3,200백만원, 운영차액 3,728백만원, 전기이월운영차액 4,683백만원, 당기운영차액 △955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합계 33,3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운영총수익은 8,045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등록금수입이 5,694백만원, 전입및기부금수입 1,366만원, 교육부대수입이 732백만원, 교육외수입이 253백만원이며, 운영비용은 보수가 3,134백만원, 관리운영비 2,995백만원, 연구학생경비 2,170백만원, 교육외비용 100백만원, 기본금대체액 600백만원, 당기운영차액 △955백만원으로 비용총계 8,0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4년 2월 28일과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한 2013회계연도 업무감사에서도 아주자동차대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부 감사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사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 최홍 : 결산(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경현
- 3 -

이사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 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2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사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남양 연구소 내 현대남양의원 운영체계를 위탁운영 형태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여 의료원의 신규환자 창출거점 및 임원진의 고가검진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대아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대우학원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및 운영, 손익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원에서 관련내용을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유희석이 현대아주의원 개설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가설명하고,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직영을 하게 되면 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은 의료원에 합산됩니까?

행정부원장 박재호 :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지만, 추후 운영손익은 병원회계에 합산되며 신고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사 신희택 :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정관상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2조 (의료원) ① 의학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통합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제92조 (의료원)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주호석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② 의료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한다.</p> <p>③ 의료원에는 기획조정실장 및 연구지원실장을 두고,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제1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두며, 병원장 및 연구지원실장과 각 진료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행정부원장은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p> <p>④ 의료원에는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p>	
<p><u>〈신 설〉</u></p> <p>⑤ 의료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u>⑤ 의료원에는 필요한 각호의 의원을 둘 수 있다.</u></p> <p><u>1. 현대아주의원</u></p> <p><u>⑥ (현행과 같음)</u></p>
	<p><u>부 칙</u></p> <p><u>(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제 3 호 아주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기관 업무 활성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대외협력담당 부실장 및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여 국내외프로젝트를 일괄 추진하고, 중국·베트남·이라크·카자흐스탄 등의 의료인 연수 및 의료사업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기획실장보를 기획담당 부실장으로, 연구지원실 실장보를 부실장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팀장을 진료운영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승인해 주신 정관 개정(안)에 따라 현재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내 현대남양의원 운영체계를 간접지원에서 의료원 산하의 현대아주의원으로 편입시켜 의료수입 증가를 도모하고 신규환자창출 거점의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의원장의 경우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특별임용교원 또는 계약된 비교원의사(촉탁의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인력운영을 유연하게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센터에 관리운영팀을 신설하여 대규모사업장 출장검진을 확대하고, 임원진의 고가검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한지환

이사

이영현

진 및 유해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마케팅 등의 추진으로 의료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박상일 : 제14조 개정(안)을 보면 현대아주의원의 경우 운영상 부속병원 산하 병원장 직속으로 두고 조직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7조 제2항 개정(안)에는 의원이 의과대학, 간호대학, 부속병원 등과 같이 나열되어 있어 규정상 부속병원 산하 조직이 아닌 별도 조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원장 유희석 : 실무상 지원 및 운영은 부속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은 직제에 부속병원 산하 조직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배홍기 : 만약, 그런 취지라면 아예 제7조 제2항은 개정하지 않고 원문대로 두면 의원은 제14조에 의거 자연스럽게 부속병원 산하조직으로 정리되어 규정상 체계와 운영상 실무가 모두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장 :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원에 관해서는 제7조 제2항을 개정하지 않고 원문대로 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외 다른 원(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박상일 :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사문길주 :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제7조 제2항은 개정하지 않고 원문대로 두며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92조 제5항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기본 행정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92조 제6항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기본 행정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기획조정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과 <삽입> 실장보를 둔다.	제9조(기획조정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과 기획담당 부실장, 대외협력담당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윤지환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②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u>기획조정실장보는 실장을 보좌한다.</u></p> <p>③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 홍보팀, 정보관리팀 및 감사팀 <삽 입> 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u>부실장을</u> 둔다.</p> <p>②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u>부실장은</u> 실장을 보좌한다.</p> <p>③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 홍보팀, 정보관리팀, 감사팀 및 대외협력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제9조의 2 (연구지원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연구지원실을 두며, 연구지원실에는 실장과 <u>실장보를</u> 둈다.</p> <p>② 연구지원실장은 의료원 연구조직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u>실장보는 실장을</u> 보좌한다.</p> <p>③ 연구지원실에는 연구지원팀을 두며, 연구지원팀에는 팀장을 둔다.</p>	<p>제9조의 2 (연구지원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연구지원실을 두며, 연구지원실에는 실장과 <u>부실장을</u> 둈다.</p> <p>② 연구지원실장은 의료원 연구조직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u>부실장은</u> 실장을 보좌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부속병원) ① 부속병원에는 원장과 제1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두며,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는 지역암센터장, 내과부장, 교육수련부장을 두고 제2진료부원장 산하에는 간호부장을 둔다.</p> <p>② 원장은 부속병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통제, 조정 등 병원전반에 관한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제1진료부원장과 제2진료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제1진료부원장은 지역암센터, 내과부 각과 및 진료각과, 교육수련부를 관장하고 제2진료부원장은 진료지원부서 및 간호부를 관장한다.</p> <p>④ 행정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사업운영팀을 관장한다.</p> <p>⑤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삽입>를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기관연구윤리심의실과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삽 입>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p>	<p>제14조(부속병원)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⑤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u>현대아주의원을</u>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기관연구윤리심의실과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u>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u>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사
-7-

이사

이경현

현 행	개 정
<p>부소장과 <삽 입> 운영팀장 <삽 입>을 둘 수 있다.</p>	<p>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u>진료운영팀장</u> 및 <u>관리운영팀장을</u>, <u>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u> 둘 수 있다.</p>
<p>제21조의 2(자격 등) ① 기획조정실의 <u>기획조정실장보</u>, <삽 입>, 연구지원실의 <u>연구실장보</u>, 각 대학의 학과장, 부학과장, 주임교수, 과장 및 소장, 의과대학의 부학장 및 의학교육실장, 부속병원의 내과부장, 교육수련부장 및 과장(실장, 부실장, 소장, 부소장)<삽 입>은 교원으로 보한다.</p> <p><삽 입></p>	<p>제21조의 2(자격 등) ① 기획조정실의 <u>기획담당 부실장</u>, <u>대외협력담당 부실장</u>, 연구지원실의 <u>부실장</u>, 각 대학의 학과장, 부학과장, 주임교수, 과장 및 소장, 의과대학의 부학장 및 의학교육실장, 부속병원의 내과부장, 교육수련부장, 과장(실장, 부실장, 소장, 부소장), 의원장은 교원으로 보한다.</p> <p>다만, 의원장은 특별임용교원 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된 비교원 의사(촉탁의사)를 보할 수 있다.</p>
<p>② 간호부장은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 각 팀장, 기사장 및 운영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④ 각 부서에는 필요한 경우 부서장을 보좌하는 파트장을 둘 수 있으며, 파트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4 호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환자 및 보호자 중 형 집행자, 사망자, 실종자, 파산자, 출국자, 경제적 무능력자로 장기간 추심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추방 또는 사망한 경우, 응급실미수금 대지급제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미수금 잔액(비급여 항목)의 경우, 2007.3월 미출근으로 인해 면직된 정규직 간호사에게 과지급된 급여(정기 급여지급 마감 후 면직)의 경우 등으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악성 미수금 396,293,671원에 대해 대손상각 처리하여 재무회계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대손상각 처리 내역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재현
-8-

이사 이영천

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상일 : 소멸시효 전에 대손상각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 사 윤성복 :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세무상 손비인정을 받을 순 있겠지만 사망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소멸시효 전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굳이 먼저 대손상각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2013학년도 결산서상에 관련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테니 좀 더 회수노력을 하시다가 2014학년도 말에 다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부원장 박재호 : 회계상으로는 매년 발생된 대손에 대해 일정금액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 내부 관리 목적상의 문제로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이를 제각 시키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손상각 처리가 없어 금번에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배홍기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출국자를 제외한 사망자, 실종자, 파산자, 경제적 무능력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상 손비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감안하여 원(안)을 상정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 장 : 내부관리 목적상 대손상각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박상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대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은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5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부속병원의 2013학년도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현황을 보시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의료수익은 2012학년도 실적대비 1.2% 증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9-
이사

이영현

가한 386,017백만원이며, 의료비용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381,415백만원, 의료이익은 전년대비 140.9% 증가한 4,60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의료외수익은 15,682백만원, 의료외 비용이 19,216백만원으로 1,068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현황으로 2014.2.28 현재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총 자산규모는 226,666백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60,949백만원, 고정자산이 165,717백만원, 유동부채가 83,174백만원, 고정부채 37,367백만원이고, 자본은 106,1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속병원의 총수입은 441,555백만원이며,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총지출은 417,561백만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23,994백만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료수입이 365,201백만원, 기타의료수입이 20,816백만원, 의료외수입이 28,267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은 50백만원, 기타고정부채수입은 263백만원, 차입금수입은 9,115백만원, 전기이월운영자금이 17,8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50,560백만원, 재료비는 135,806백만원, 관리비는 47,129백만원, 의료외비용은 11,543백만원, 기타투자자산지출은 500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 140백만원, 차입금상환이 11,704백만원, 유형고정자산지출이 20,555백만원, 고유목적사업전출금 39,624백만원이 되겠으며 차기이월운영자금은 23,9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먼저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흥 기 :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결산 감사 결과, 부속병원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4년 2월 28일과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기본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각각 의료기관회계규칙과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3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세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과대학 자금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의 등록금회계는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등록금회계 수입을 한도로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에 맞지 않는 예산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대병원의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병원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매년 의과대학 자립도 산출 및 관리를 통하여 기부금 유치를 위한 노력, 지출 예산의 합리적인 삭감 조정 등 의과대학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실질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결산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 10 -
자나희

이사
이경현

두 번째로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안치료 등 직접매출 중 현금결제 수입의 경우, 수납·관리 및 금고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자 한 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금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현금의 횡령과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의 수납, 관리 및 회계처리에 있어 적절한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례식장 감액정책과 관련해서도 타 기관에 비해 감액 대상 범위가 넓으며 이로 인해 순이익의 증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감액 적용 대상 범위 및 감액률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여 마케팅의 중점 대상 및 수익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임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1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임상시험센터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용 이외 임상시험센터 소속이나 의료원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임상시험센터의 지출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임상시험센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상시험센터의 존재로 인해 체결된 임상수주계약과 이에 대한 총지출액을 집계하여 임상시험센터의 손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임상시험센터의 손익이 병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의료원에서 지급되는 임상시험센터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는 등 병원 손익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임상시험센터의 설립취지가 수익 창출이 주요 목적은 아니나 국고보조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 장 : 감사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부속병원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윤성복 :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이익이 약 46억원 정도인데, 이 수치라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의료원장 유희석 : 대개 동급병원 의료이익은 의료수익 대비 1~2% 사이이며 일부 병원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주대병원은 평균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 장 : 이외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신희택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1 - 2 / 2013

이사 이영현

제 6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원화리스 5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원화리스 5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의료원 2014학년도 필수 의료장비 도입자금을 원화리스 50억원으로 예산 편성함에 따라 해당 원화리스를 다음과 같이 포괄계약 하고자 합니다. 리스사는 NH농협캐피탈(주)로서 금리는 기준금리에 0.56%를 더한 3.872%로 1년 단위 변동금리이며, 50억원의 리스도입 대상 장비는 임상각과에서 신규구입 및 노후교체, 장비단종 등의 필수 사유로 구입이 요구되는 장비입니다. 포괄계약의 주요내용 및 의료기기 장비목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주인욱 : 리스 활용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원화리스 5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원화리스 5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 내용

구 분	제 약 조 건	비 고
리스사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계약금액	50억원	
리스기간	5년	
납부방법	3개월 후불	
금 리	기준금리(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A-) + 0.56% [3.312%+0.56% = 3.872%]	1년 단위 변동금리
리스형태	금융리스	
담보제공	무담보 신용	
종료후 처리	무상양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 죠 이 죠

이사 이영현

제 7 호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본 안건은 병원동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권역외상센터 헬리패드의 캔틸레버와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건축허가를 위한 연면적 산출시 이를 포함시켜야 함에 따라 기 승인된 면적에서 296.61m^2 만큼의 면적 증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치과 치기공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증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2008.9월에 치과 수련병원 실태조사 때 도재실 분리 점검항목으로 인해 최초 설치를 하였으며, 영통구청에서 아주대학교 기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현황에 대하여 앞으로는 연장 불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구조 변경함으로써 병원동 자체 면적으로 포함시켜 29.1m^2 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위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문길주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최홍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내용

> 권역외상센터 헬리패드 캔틸레버 관련 : ▲ 296.61m^2 (89.8평)

* 위치 : 병원동 옥상 헬리패드

* 기존 승인면적 : 398.41m^2 (120.5평) → 실제사용 바닥면적

* 재승인 요청면적 : 695.02m^2 (210.3평) → 건축허가 예정면적

> 치과 치기공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구조변경 : ▲ 29.1m^2 (8.8평)

* 위치 : 별관 지하 1층 DA

< 간서명란 >

이사장

추도석

이사 이 자 홍

이사 이 경현

제 8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총무처장 이주희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계산서 총 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44,102백만원으로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등록금 수입은 124,447백만원, 전입금 수입은 48,896백만원, 기부금수입 7,721백만원, 국고보조금수입 19,516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은 11,009백만원, 교육외수입은 3,148백만원, 기타자산수입은 957백만원, 임의기금인출수입 7,125백만원, 고정부채입금수입이 5,380백만원, 2012학년도 이월자금인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15,9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보면 교원과 직원, 조교, 임시직원, 강사료 등 보수가 104,884백만원, 관리운영비 24,949백만원, 연구비 4,548백만원, 학생경비 59,867백만원, 교육외비용은 1,616백만원이며, 기타자산지출 810백만원, 임의기금적립이 9,553백만원, 유형고정자산매입이 10,636백만원이고 장기차입금상환 11,606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이 120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15,5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2.28 현재 유동자금은 62,184백만원, 기타유동자산은 16,133백만원, 투자자산 115백만원, 기타자산 4,091백만원, 임의기금 47,392백만원, 유형고정자산 158,407백만원, 무형고정자산 10백만원으로서 총자산규모는 전년대비 3,705백만원 감소한 288,332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62,804백만원, 장기차입금은 4,875백만원, 기타고정부채는 1,313백만원으로서 부채 총계는 전년대비 8,362백만원 감소한 68,9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에서는 출연기본금이 92,499백만원, 임의적립금이 49,834백만원, 운영차액이 77,007백만원으로 기본금의 합계는 219,340백만원으로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288,3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학년도 운영계산서를 설명 드리면 운영수익과 운영비용 총계는 각각 전년대비 10,979백만원 증가한 214,884백만원으로, 비용 합계 210,227백만원, 기본금대체액 9,553백만원, 운영차액 대체액 △7,125백만원, 당기운영차액 2,2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우선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4년 2월 28일과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14-

2013

이사

이영현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는데, 먼저 캠퍼스플라자 임대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캠퍼스플라자의 전대계약으로 학교에 큰 손실을 끼쳤음에도 이번에 대복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다시 전대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추진되었고, 교육용 재산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이 이사장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법인의 지적에 따라 학교가 변경한 임대차계약(대복과의 임대차계약 제외)과 기존 임대차계약의 가격조건이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과거 로코코 사례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복과 전대를 허용하는 계약을 추진한 사유, 교육용 재산의 장기대여에 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사유, 기존 임대차계약의 가격조건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 사유 등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복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된 경위를 학교 차원에서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관련자를 배제한 특별 감사팀 등을 구성하여 명백히 규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 감사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과 프로세스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외연수계약 현황 및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위한 주거래 여행사 선정에 있어서 제안서상 아주투어의 2009년 매출액은 86백만원, 자산총액은 아예 기재되지 않아 안정적인 계약이행의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대부분이 아주투어와 이루어졌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연수 및 항공권의 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행사의 재무적 안정성과 신용도가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한 평가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연수 진행계약 일반 조건 제14조에 따라 대금지급은 좌석확보 및 예약확인 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거래여행사의 계약불이행으로 학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자체감사를 통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및 공동기기센터 장비이용료 등 미수금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관리비가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기기센터의 경우 거래처 파산, 센터 직원의 업무 인수인계 잘못 등으로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보육센터와 공동기기센터는 미수금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의 문서화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미수금 관리·통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계약서 및 세부기준에 따라 미수금의 연체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재분석 의뢰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정 준수를 통해 현재 존재하는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또한 업체 입주시 이런 규정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15 -
이지훈

이사

이영현

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여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교비회계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 카드 사용 내역 중 표본을 추출하여 검토한 결과, 사용업종 제한의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소명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건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성실한 이행준수를 통해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8조 사용업종 제한 규정에서 “부서 업무 특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법인카드의 사용 통제 목적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전형료 집행 현황 및 개선 여부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여론에 따른 입학전형료 인하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전형료의 지출을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고 고정성 경비와 입학 지원자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성 경비 분석에 따라 지출에 맞는 전형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입학 전형 불참 및 불합격 단계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해 주어야 하므로 전형 참가자의 불참 사유와 입시 전형 단계별 전형료 지출을 구분하여 반환금액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비의 사용 내역 제한 및 입학정원 별 규모(지출액의 30%)에 맞도록 홍보비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며, 사용 및 회계처리에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2항에서 입학전형료의 지출 경비를 12개 과목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지출항목의 경우 명시된 계정과목 내에서 회계처리 되도록 기존 22개 계정과목에서 12개의 계정과목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사 문길주 : 감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교비회계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입학전형료의 홍보비 사용 적정성과 관련하여 이를 집행한 사람에 대해 부적절한 사용으로 규정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면밀히 조사한 후 적발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경고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조치한 다음에 추후 다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 감사님과 이사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학교에서는 성실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박상일 : 이 외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6 - 2015. 2. 24. 2015. 2. 24.

이사 이영현

이사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 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9 호 아주대학교-광교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승인(안)

이사장 : 아주대학교-광교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승인(안) 발의.

총무처장 이주희 : 아주대학교 북측과 광교신도시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정문의 지·정체를 감소시키고, 보행환경 개선 및 신분당선 신설역(경기도청)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CJ연구소 방향 및 신분당선 연결 보행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CJ연구소 방향인 도로1은 길이 26m, 폭 10m의 차도 및 인도이며, 신분당선 연결 보행로인 도로2는 길이 274m, 폭 3m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입니다. 총예상 사업비는 약 327,050,000원이며, 이사회에서 원(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2014년 7~9월 정도 공사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신회택 : 설명하신 내용 이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신상협 :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광교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광교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 도로개요

- 도로1(CJ연구소방향) : 팔달관 후면 순환도로 ~ CJ연구소
- 도로2(신분당선 연결 보행로) : 다산관 북측 연결보도 ~ 광교

구 분	길이(m)	폭(m)	면적(m^2)	비 고
도로1 (학교부지 내)	26	10	419	차도, 인도
도로2	274	3	864	인도, 자전거도로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사
이사

이영현

- 1) 도로1(학교부지 내)의 경우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 진입로 폭이 넓게 설계
- 2) 도로1(학교부지 외)의 경우 길이 23m, 폭 10m, 면적 251㎡로 수원시에서 개설 준비 중
- 3) 도로2의 경우 다산관 주차장 진입로 주변에 폭이 3m를 초과하는 구간이 일부 존재
※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도로선형 및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예상)

(단위 : 원)

구 분	개략사업비	비 고
설 계 비	19,500,000	
인허가비	30,000,000	-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공사비	도로1	- 주변 토공사 제외 금액
	도로2	- 주변 토공사 제외 금액
합 계	327,050,000	- 차량정산케이트, 가로등, 기타 시설 제외

※ 설계용역비 예산 반영 (423303-01 : 20,000천원)

※ 인허가비 및 공사비 미반영(설계완료 후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제 10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발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임기가 2014년 5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현행과 같이 학교의 장 추천자 중 4인과 이사 중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우선 학교의 장 추천자에 대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교원 명단 및 자세한 이력사항은 회의자료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의 장께서 추천하신 해당 추천인 4인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고,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학교의 장 추천인 4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 의학과 김영수 교수, 생명과학과 최홍근 교수, 경영학과 김광운 교수에 대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으로 선임 · 의결하다.)

이 사 장 :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는 지난 해 제305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문길주 이사님, 주인욱 이사님, 박상일 이사님 세 분께서 징계위원을 맡아 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8 -

이니호

이사

이영현

올해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사 문길주, 주인욱, 박상일은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승낙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문길주, 이사 주인욱, 이사 박상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용, 의학과 교수 김영수, 생명과학과 교수 최홍근, 경영학과 교수 김광윤 등 7인을 임기 1년 (2014.6.1 ~ 2015.5.31)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1 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선임(안) 빌의.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임기가 오는 2014년 5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신임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주자동차대학 산학처장을 맡고 있는 자동차계열 신성호 교수를 후임 총장으로 추천합니다. 신성호 교수는 95년 개교시부터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전문가이며, 교무지원실장 및 산학지원실장, 기획실장 등 오랜기간 보직수행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이력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신성호 후보의 이력내용을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이력 내용을 보니 다년간 보직수행을 통해 자동차대학 경영 실무에 능한 분으로 여겨져 아주자동차대학의 총장으로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개교시부터 재직하셨던 분이시라 학교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더욱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성호 후보의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선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 장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신성호 후보의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선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에 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계열 신성호 교수를 2014.6.1부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9 -

신성호

이사

이영천

□ 총장 선임 내용

소속	직급	성명	직책	임기
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계열)	교수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2014.6.1~ 2018.5.31

제 12 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이사장 : 2013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먼저 결산(안)의 자금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8,681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부속병원전입금 수입이 5,672백만원, 일반기부금 수입이 65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2,445백만원, 임대료·관리비수입이 1,720백만원, 잡수입 등 2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9,904백만원이며, 토지매각대 1,134백만원, 건물매각대 967백만원, 임대보증금수입 170백만원으로 자산 및 부채수입이 2,271백만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6,5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임직원보수 591백만원, 시설관리비 142백만원, 일반관리비 287백만원, 운영비 408백만원, 지급이자 35백만원, 전출금 7,623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9,086백만원이며,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이 2,164백만원, 자산 및 부채지출이 633백만원, 2013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6,7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2.28 현재 자산규모는 333,096백만원이며, 부채는 3,206백만원, 기본금총액은 329,8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동자금 6,490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95백만원, 설치학교 173,201백만원, 부속병원투자 79,859백만원, 투자유가증권 100백만원, 기타투자자산 24백만원, 유형고정자산 13,725백만원, 원금보존 기타기금 58,679백만원, 임의퇴직기금 369백만원, 기타자산 등이 254백만원으로 자산총계는 333,096백만원이며, 부채의 세부항목으로 유동부채는 88백만원, 장기차입금이 1,256백만원, 기타고정부채 1,862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3,206백만원이며, 출연기본금은 248,518백만원, 운영차액이 22,324백만원, 원금보존기타적립금 58,679백만원, 임의퇴직적립금 369백만원 등 기본금은 329,890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33,0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법인회계의 운영비용 및 운영수익 총계는 14,697백만원으로 운영비용 합계 12,597백만원, 기본금대체액 2,164백만원, 당기운영차액 △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0 -

이사

이영현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성도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의견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에 대하여 2014년 2월 28일과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전출 의무기준에 따른 2014년 4월 1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및 전출 실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수익률인 3.5% 이상인 4.2%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법정부담률 또한 법정전출 의무비율인 8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사 문길주 : 법인회계 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사 장 : 제312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희택 : 이사장님과 안재환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임원 10인 전원이 신희택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이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1 -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12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4년 5월 20일

이사장 추호석 추호석
이사 윤성복 윤성복
이사 안재환 안재환
이사 문길주 문길주
이사 신희택 신희택
이사 주인욱 주인욱
이사 박상일 박상일
이사 신상협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영현
이사 최홍치 최홍치

감사 문휘창 문휘창
감사 배홍기 배홍기